

제 호

품 목 허 가 증

작 업 장 명 칭

작 업 장 소 재 지

최 초 품 목 허 가

연 월 일

품 목 명

위 생 등 급

부 표 : 별 첨

위 품목을 축산물위생처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합니다.

년 월 일

시 · 도지사

[인]

2608-111일(1)

85. 7. 1 승인

190mm×268mm

(인쇄용지(특급)120g/m²)